학생창업 지원에 관한 규정

2026. 10. 19. 최초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전보건대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학생의 창업활동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창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대전보건대학교 재학생 및 휴학생을 말한다.
2. “창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학생창업”이란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창의적인 아이디어, 기술, 지식 등을 활용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하며, 대학 또는 교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로 창업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조(기본원칙) ①학생창업자는 관계 법령 및 대학의 제규정을 준수하고 대학의 지원을 통해 수행하는 창업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학생창업자는 창업을 이유로 학업에 지장을 주는 제반 행위를 하지 못한다.

③창업에 관한 사항은 창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의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4조(적용범위) ①이 규정의 적용을 받아 창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 제1호에 따르되 제10조, 제11조, 제12조에 따른 대학의 지원을 받아 창업하고자 하는 학생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학생창업의 적용 범위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에 따른다.

제2장 창업 절차

제5조(창업신청)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서류를 구비하여 창업 업무 주관 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학생 공동 창업의 경우 구성원 모두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생창업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2. 사업계획서 [별지 제2호 서식] [자유 양식 사용 가능하나 서식 내용을 포함해야 함]
3.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별지 제3호 서식]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제6조(창업심의) ①학생창업 관련 심의는 위원회가 담당하며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및 사업성 여부

2. 창업 신청자의 적격성 여부
3. 대학 발전에의 기여 가능성
4. 기타 사항

②창업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하되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창업이행) ①창업 승인을 받은 학생은 법인설립등기, 사업자등록, 임대차계약 등 창업에 필요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창업 승인을 받은 학생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창업 승인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로부터 사업자등록증(법인 또는 개인)을 발급받고 이를 창업 업무 주관 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③학생창업자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일로부터 창업 관련 지원사업 지원을 제한한다.

제8조(의무사항) ①학생창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창업 업무 주관 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 정정에 관한 사항
2. 주요사업 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창업 및 운영 관련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사항

②학생창업자는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2. 손익계산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작성의무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
4.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및 가입자 명부(해당하는 경우에만 제출)

③대학은 학생창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학생창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창업제한) 학생창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을 제한 또는 취소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경우
2. 규정 제7조, 제8조에 의한 행위를 소정의 기일 내에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창업 신청 내용 또는 운영을 사실과 다르게 한 경우
4. 규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악용한 경우
5. 기타 창업 승인 제한 또는 취소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

제3장 창업지원 및 대학 발전에의 기여

제10조(시설사용) ①학생창업자가 창업활동과 관련하여 대학 시설물의 사용을 요청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와 관련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②학생창업자는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이를 제3자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대학은 학생창업자에게 대학의 시설물을 사용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비하여 보험에 가입하게 할 수 있다.
④학생창업자 및 그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대학의 시설물에 인적, 물적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창업지원) ①학생창업자는 창업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동아리, 창업교육 등 창업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창업의 전 단계를 체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②학생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학은 관련 자원 및 재원을 지원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대학 또는 재정지원사업의 재원을 통해 취득한 자산 발생 시 관련 재원의 규정·지침 등에 따른다.

제12조(지식재산권) ①학생창업자가 본 대학 산학협력단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 따른다.
②지식재산권 관리규정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해당 직무를 관장하는 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진행한다.

제13조(대학 발전에의 기여) ①학생창업자는 대학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②학생창업자가 대학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 발전기금 납부
2. 신규 인력 채용 시 대전보건대학교 졸업생 우선 고용
3. 기타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2026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예외사항)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 재정지원의 상위기관, 관련 법령 및 대학의 제규정에 따른다.

[별지 제1호 서식] <신설 2026.10.19.>

학생 창업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학 과		학 번		
	주 소				
창업현황	창업구분	☐ 예비창업자 ☐ 기창업자		창업일 (예정일)	년 월 일
	창업형태	☐ 개인 ☐ 법인 ☐ 기타		기업명 (예정명)	
창업 아이템	창업 아이템명				
	창업 아이템 개요	※주요 제품·서비스의 특징 등을 간략하게 작성			
추진현황	※아이디어 개발, 시제품 제작, 사업자등록, 매출현황 등 주요 추진내용				
창업활동	※창업 관련 교내/외 주요 활동(참여)내용				
창업지원 (복수선택 가능)	☐ 창업교육 ☐ 멘토링·컨설팅 ☐ 창업공간 ☐ 시제품 제작 ☐ 지식재산권 ☐ 사업화지원 ☐ 기타 (기타 선택 시 간략하게 작성)				
창업계획	※향후 제품·서비스 개발, 사업화, 시장진출 등 주요 추진계획				

첨부 : 1. [별지 제2호 서식] 사업계획서 1부.
2. [별지 제3호 서식] 창업대상 기술설명서 1부.
3. [필요시 첨부] 기타 심의 자료 각 1부.

위와 같이 학생창업지원을 신청합니다.

20 . . .

소 속 : 성 명 : (서명)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대전보건대학교 산학협력단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신설 2026.10.19.>

사 업 계 획 서

회 사 명	
창업아이템명	
신 청 인 (대 표 자)	

※ 유의사항

1. 사업계획서의 내용은 A4용지 10페이지(갑지 제외) 내외로 작성
2. 사업계획서의 보충 설명을 위해 필요한 자료가 있을 경우 별도 첨부하여 제출
3. 제출된 사업계획서는 관련 행정절차에 의한 열람·사용 등을 제외하고는 보안 유지

1. 창업기업 현황

가. 창업자의 인적사항

성 명	(한글) (한자) (영문)		생년월일		
학 력	학 교 명	졸업년도	전 공	학 위	비 고
	※고등학교부터				
경 력	근 무 처	근무기간	직 급	담당업무	
	※최근경력부터				
특기사항	※특허, 실용신안 등 창업관련 지식재산권 보유 현황 등을 기재 ※창업자와 기술보유자가 다를 경우 상호관계를 구체적으로 기술				

※ 창업자가 數人(수인)인 경우이거나 창업자 외에 경영실권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로 추가 작성 요망

나. 참여인력

성 명	구 분	생년월일	소 속	최종학력 및 전공	주요 경력	연락처
홍길동	비상근	1900.00.00	㈜홍길동	석사 (○○○학)	㈜홍길동	010-0000-0000

※ 구분란에는 상근, 비상근을 표시

2. 창업기업 사업내용

기술성	창업 아이템명	※ 개발/생산 제품의 최종목표(제품명) 등을 기재
	사양/성능	※ 최종 개발품의 개발목표 사양과 성능을 구체적으로 기술 ※ 사업화에 기술력의 기여도 등
	용도/ 활용분야	※ 최종 개발품의 용도, 활용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
	보유기술/ 핵심기술	독자개발기술(), 대학(산단포함) 보유기술(), 특허 관련 사업화() 기술도입(), 기타(내용기재)
		※ 창업사업명과 관련된 보유기술/핵심기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창업사업명과 관련된 기술개발 실적, 사업화 실적, 지식재산권 등을 기술
사업성	국내외 관련 기술현황	※ 국내외 관련기술의 현황 및 문제점과 전망 등을 기술
	국내외 시장규모	※ 현재 및 향후 3년간의 예상되는 시장규모(국가 또는 지역), 시장의 성격, 시장 진입 시 예상 문제점 등을 가능한 범위내에서 객관적으로 기술
	국내외 수요처	※ 주요 수요처, 주생산품, 수요량 및 금액 등을 기술
	기술/가격 경쟁력	※ 국내외 관련기술(제품)과의 기술적 차이점, 비교우위, 성능 등을 기술 ※ 경쟁사 정보(상호, 매출액, 시장점유율, 생산능력 등) 등을 기술
	기대효과	※ 사업화 완료 시 국내외 산업의 기대효과 등을 기술

3. 창업기업 추진 계획

가. 현재까지 준비사항

※ 창업에 관련된 현재까지의 준비사항을 명료하게 기술 (기술개발 정도와 사업화 준비를 구분하여 기술)

나. 추진계획 및 전략

구 분	추진내용	추진일정
설립계획	※ 회사설립에 관한 구체적인 추진전략을 기술	월별단위로 기재
기술전략	※ 현재 기술 보유현황, 설계, 시제품까지의 추진전략을 기술 ※ 기술개발 시 문제점 및 해결방안 등을 기술	
상품전략	※ 시제품 제작 완료 후 성능평가, 양산개발, 특허출원, 대외 기관 인증 획득 등 상품화 전략 ※ 목표시장, 홍보 및 마케팅 전략, 시장진입 전략 등을 기술 ※ 양산체제 구축 방안 등을 기술	
사업전략	※ 생산공정, 생산체제 계획 등을 기술 ※ 경영체제 구축 전략, 중장기 사업전략 등을 기술 ※ 상기 기술개발이 실패할 경우 대책마련 등을 기술	

※ 추진계획 및 전략 작성 시 향후 1년간의 기간을 설정하고 작성할 것

4. 사업비

구 분		금 액	비율(%)	비 고
자본금	창 업 자			
	기 타			
	소 계			
차입금	금융기관			
	기 타			
	소 계			
총 계				

5. 창업동기 및 지원 사항

(1) 창업 동기
(2) 창업 지원 신청사항 ※ 창업 관련하여 본교에서 지원해 주길 희망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기재
(3) 창업 시 사용 예정 시설/설비/기자재 등 ※ 시설/설비/기자재명(공급전력 특이사항, 용도, 규격, 크기, 중량, 수량) 등을 기술 ※ 제품 개발시 필요한 고가 시설/설비/기자재 등을 기술 (보유 시설/설비/기자재 등을 활용할 경우에도 작성)
(4) 기타 창업승인 심의에 도움이 되는 사항

6. 대학 발전에의 기여 계획

(1) 대학 재정 기여 계획

※ 창업활동에 따른 대학 재정 기여 계획을 기술

※ 출연방법, 출연시기, 출연금액(주식·지분 등 또는 현금) 등 출연계획

(2) 기술료 상환 계획

※ 대학(산단 포함) 기술을 사용한 창업일 경우 희망 기술 실시 기간, 기술료 등을 기술

※ 기술이전을 희망하는 경우 희망 조건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 동의서】

대전보건대학교(산단 포함, 이하 같음) 학생창업 지원 및 승인을 위해 수집된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얻어 다음의 목적을 위해 이용됩니다.

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및 이용 항목

(1) 대전보건대학교 학생창업 지원 및 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를 다음과 같이 수집 합니다.

(2) 창업자 및 창업관련자의 정보(창업기업명, 성명, 생년월일(필요시 주민등록번호), 사업자 관련 정보, 소속, E-mail, 전화번호(개인연락처 포함), 금융정보 등) 등을 수집하여 창업자와의 연락, 사업의 안내 및 진행 등의 업무처리 시 사용

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제출일로부터 문서보존년한 종료시

※ 개인정보 제공·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만약 동의를 거부할 시 해당 사업과 관련한 안내 및 지원에 대한 업무처리가 제한되거나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제공·수집 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20 . . .

동의자 : (서명)

대전보건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신설 2026.10.19.>

창업대상 기술 설명서

<table>
<tr><td rowspan="5">연구개발
기술개요</td><td>기 술 명
(특허번호)</td><td colspan="3"></td></tr>
<tr><td>주요기능</td><td colspan="3"></td></tr>
<tr><td>특 징</td><td colspan="3"></td></tr>
<tr><td rowspan="2">기존기술과의
차이점</td><td>기존 기술의 기능</td><td>개발한 기술의 기능</td><td>기능비교</td></tr>
<tr><td></td><td></td><td></td></tr>
<tr><td rowspan="4">개발환경</td><td>개발인력</td><td colspan="3"></td></tr>
<tr><td>개발장비</td><td colspan="3"></td></tr>
<tr><td>활용자료</td><td colspan="3"></td></tr>
<tr><td>개발지원
설비 및 교원</td><td colspan="3"></td></tr>
</table>

※ 별지 사용 세부내용 작성 또는 별도 기술 관련 자료 첨부 가능